



제336회 정례회

2014.11.25.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14년 11월 04일
- 회부일자: 2014년 11월 06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충청북도조례 제3635호)가 2014. 5. 8.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복무 등에 대하여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다음의 업무를 변경함(안 제5조)

- 1) 관할학교의 학급 배정 업무를 삭제함(안 제5조제11호)
- 2) 교육장의 업무로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및 공립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채용·관내전보·임지 지정·휴직·복직·해고·징계를 추가함(안 제5조제31호가목)
- 3) 교육장의 업무로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보수·복무·근무성적평정을 추가함(안 제5조제31호나목)

나.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소속 근로자의 보수·복무·근무성적평정을 추가함(안 제6조제9호)

다.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소속 근로자의 보수·복무·근무성적평정을 추가함(안 제7조제7호)

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5호, 제8~10호, 제21~22호, 제27호)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14. 1. 24.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가 2014. 5. 8.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복무 등에 대하여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 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와 관련한 교육장의 업무로 안 제5조제31호가목에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 및 공립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채용·관내전보·임지지정·휴직·복직·해고·징계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제31호나목에는 교육지원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보수·복무·근무성적 평정을 추가함.
- 또한, 안 제6조제9호 및 제7조제7호를 통하여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각각 소속 근로자의 보수·복무·근무성적 평정 업무를 추가함.
- 이 밖에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관할학교의 학급 배정 업무가 현실과 맞지 않아 삭제하고,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내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는 등 바르게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1.][법률 제12394호, 2014.2.13., 일부개정]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9.12.][대통령령 제25375호, 2014.6.11., 일부개정]

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

□ 충청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14.5.8.][충청북도조례 제3635호, 2014.2.7.,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2. “각급 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소속 본청,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3.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2.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점임교사 등
3.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 교원
4. 그 밖의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6조(채용)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근로자를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에게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2014.8.8.] [충청북도조례 제3690호, 2014.8.8., 일부개정]

제47조(설치)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도서관, 학생회관, 교직원복지회관, 영어체험센터를 둔다.